

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4. 11. 19 선고 2024가단1844 판결 [건물명도 등]

전 문

원고 1. A

2. B

소송대리인 A

피고 C

소송대리인 D

변론 종결 2024. 10. 22.

판결 선고 2024. 11. 19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들에게,

가.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,

나. 72,600,000원과 2024. 9. 16.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6,600,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2. 10. 13. 계약기간 2022. 11. 30.부터 2024. 11. 30.까지, 임대차보증금 70,000,000원, 차임 월 6,600,000원(부가세 포함)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(이하 '이 사건 임대차계약'이라 한다), 피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하였다.

나.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 지급을 연체하다가 2023. 11.분부터는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, 이에 원고들은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2024. 1. 23.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(가지번호 포함)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주장 및 판단

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, 차임 내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으로 2023. 11.분부터 2024. 9.분까지 합계 72,600,000원(= 6,600,000원/월 × 11개월)과 2024. 9. 16.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6,600,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3. 결론

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.

판사최지경

별지